

제289회 임시회
도시계획위원회

서울특별시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임종국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임 종 국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임종국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‘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’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유엔협약과 우리나라 법률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떠한 경우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행위 역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

현행 「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」 제25조제3항은 서울시 각 분야 전문가로 하는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’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는 자칫 장애가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장애인이 업무완결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.

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실시한 ‘자치법규 인권 관련 실태조사’ 에서도,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지적되어 개정 권고의 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.

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제척·회피 사유에서 ‘심신장애’ 라는 용어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 으로 수정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.

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